

특정감사 결과 [공개용]

[재)완주문화재단



[일련번호] 1

감사결과 조치계획

[제 목] 예산변경 절차 미준수

[부서·기관명] (재)완주문화재단

[행정상 처분] 주의

[재정상 처분] 없음

[신분상 처분] 없음

[현 황]

○ 예산변경 현황

(단위 : 원)

연도	편성목	당초예산액	변경예산액	다 음 연 도	변 경 승 인
		출연금	출연금+ 이월금	이 월 액	여 부
21년	계	000,000,000 (출연금)	0,000,000,000 출연금 : 000,000,000 이월금 : 000,000,000	00,000,000	부
	인 건 비	000,000,000	000,000,000		
	운 영 비	000,000,000	000,000,000		
	사 업 비	000,000,000	000,000,000		
	예 비 비		000		
22년	계	000,000,000 (출연금)	000,000,000 출연금 : 000,000,000 이월금 : 00,000,000	0,000,000	부
	인 건 비	000,000,000	000,000,000		
	운 영 비	000,000,000	000,000,000		
	사 업 비	000,000,000	000,000,000		
23년	계	000,000,000 (출연금)	000,000,000 출연금 : 000,000,000 이월금 : 4,668,850	0,000,000	부
	인 건 비	000,000,000	000,000,000		
	운 영 비	000,000,000	000,000,000		
	사 업 비	000,000,000	000,000,000		

[지 적 내 용]

-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18조(예산의 편성 등)에 따르면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 IV 행정사항 에도 이사회 의 심의·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.
- 또한, 「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(사업계획과 예산·결산), 「완주문화재단 정관」 제24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, 「완주문화재단 제무회계 규정」 제10조(예산의 편성)에도 매년 9월전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- 따라서,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하나 이사회 의 의결 과정만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 변경에 대한 보고(승인) 없이 변경한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

-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예산성립 후 사정변경에 의한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 의결 후 완주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주의)

[일련번호] 2

감사결과 조치계획

[제 목]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비위관리 방안 마련

[부서·기관명] (재)완주문화재단

[행정상 처분] 시정

[재정상 처분] 없음

[신분상 처분] 없음

[현 황]

○ 음주운전 징계규정 (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3 - 제2조1항 관련)

유 형 별	징계요구 (처리기준)	징계기준	비 고
1.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. 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. 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이상 0.2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. 혈중알코올농도가 0.2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.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	경징계 또는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	정직~감봉 강등~정직 해임~정직 해임~정직	1. “음주운전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,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. 2. “운전업무 관련 공무원”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. 3. 운전업무 관련 근무자가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.
2.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중징계	파면~강등	
3.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중징계	파면~해임	
4.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중징계	강등~정직	
5.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중징계	파면~강등	
6.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.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나. 사망사고의 경우 다. 사고 후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)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2)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	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	해임~정직 파면~해임 해임~정직 파면~해임	
7. 운전업무 관련 근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.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나.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	중징계 중징계	파면~해임 해임~정직	

-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」 “Ⅳ.투명한 윤리경영 ② 징계 등” 에 의하면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보수규정,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「완주문화재단 인사규정」 제8장 상벌 56조에서 60조에 징계의 대상, 종류와 효력, 보수, 절차, 징계양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“음주운전” 비위에 관한 징계기준은 따로 정한 바가 없다.
- 한편,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34조의2(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·종료통보)에 의하면 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은 출자·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다.

[지 적 내 용]

-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인사규정에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,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도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음주운전 비위행위자가 승진, 포상을 받거나 보수에 대한 제재 등을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
- 따라서,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및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·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설립 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하거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보수·승진·포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.

[처 분 요 구]

-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인사규정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정하여 주시고, 음주운전 비위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·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징계·보수·승진·포상 등의 인사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시정)

[일련번호] 3

감사결과 조치계획

[제 목] 인사규정 정비 소홀

[부서·기관명] (재)완주문화재단

[행정상 처분] 시정

[재정상 처분] 없음

[신분상 처분] 없음

[현 황]

○ (재)완주문화재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현황

구 분	
제3조의 4(채용공고)	
① 채용계획 수립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 공고문을 재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잡(행정안전부 통합공개시스템)등에 공고하여야 하며,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, 방송, 인터넷 또는 게시판, 관련 협회 및 단체, 대학 등에 모집 공고문 송부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 할 수 있다.	
관련 규정	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 Ⅲ. 직원의 인사 ③ 채용시험의 공고 나. 공고매체 공개경쟁·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자·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,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
제3조의 4(채용공고)	
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 없이 워크넷 등의 구인등록자 중에서 채용할 수 있다. 1.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·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. 2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응키 위해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히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 없이 워크넷 등의 구인등록자 중에서 채용 할 수 있다.	
관련 규정	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 Ⅲ.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 가. 공개경쟁시험

	다음 각 호의 경우, 사전협의 통보기한 단축 및 협의내용 간소화, 공고기간 단축, 시험단계 축소, 시험위원중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 등 채용절차를 간소화 할수 있음 1.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2년 이하로 명확한 일시·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(예시: 초단시간 근로자, 일용직 근로자 채용 등) 2. 국민의 생명·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- 「감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-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이 경우에도 공개경쟁시험 채용원칙을 유지하여야 하며, 채용절차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설립 지자체 협의, 시험성격, 기관의 채용사정, 채용 예정직위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가능
--	---

[지 적 내 용]

-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」에 따르면 공개경쟁·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기관 홈페이지, 지자체 홈페이지,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통합 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며, 직원의 신규채용시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시험 채용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
- 그러나, (재)완주문화재단 「인사규정 시행세칙」에 채용공고의 공개매체를 재단 홈페이지, 행정안전부 통합공개시스템으로 한정하였고 특수한 상황 발생시 채용공고 없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

-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인사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시정)

[일련번호] 4

감사결과 조치계획

[제 목] 공가사용 부적정

[부서·기관명] (재)완주문화재단

[행정상 처분] 주의

[재정상 처분] 없음

[신분상 처분] 없음

[현 황]

○ 공가신청 현황

신청자		공가 신청일	신청사유	비고
직급	성명			
○○○○○○○	○○○	0000. 00. 00.	2차 건강검진	
		0000. 00. 00.	건강검진	

[지 적 내 용]

- 「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복무규정」 제27조(공가)에 의하면 공가 신청은 ‘ 1. 예비군, 민방위, 기타 병무관계로 소집되거나 훈련에 참가할 때, 2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, 3. 천재지변, 교통차단,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, 4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, 5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행사에 참가할 때’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 사용은 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, 영유아건강검진으로 한정하고 있다.
- 그러나 상기 직원은 건강검진 실시 후 2021. 12. 3. 추가 2차검진을 받으면서 개인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가를 사용하였으며, 2022. 6. 15. 건강검진을

위한 공가를 허가 받은 후, 해당 일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

-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주의)

[일련번호] 5

감사결과 조치계획

[제 목] 재무회계 규정 정비 소홀

[부서·기관명] (재)완주문화재단

[행정상 처분] 시정

[재정상 처분] 없음

[신분상 처분] 없음

[현 황]

○ (재)완주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개정 소홀 현황

관련 규정	현행 규정 내용	개정 할 내용	비 고
(재)완주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58조(계약의 방법) 제2항	~완주군에서 정하는 <u>재무회계규칙</u> 등을 준용한다	~완주군에서 정하는 <u>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 등을 준용한다	
(재)완주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59조(서식)	~ <u>완주군 재무회계 규칙</u> 에 따른다.	~ <u>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</u> 에 따른다	
(재)완주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[별지 제4호 서식]	물품 매입(수리·제조) 품의서	2개 규정에서 같은 내용의 서식이 별도 있으므로 통합 서식으로 개정 필요	
(재)완주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 [별지 제10호 서식]	매입(수리·제조)품의 및 요구서		
(재)완주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[별지 제5호 서식]	물 품 납 품 확 인 서	2개 규정에서 같은 내용의 서식이 별도 있으므로 통합 서식으로 개정 필요	
(재)완주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 [별지 제11호 서식]	물품 검사 검수 조서		

[지 적 내 용]

○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2조(적용범위)에 완주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예산 및 회계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.

- 같은 규정 제58조(계약의 방법)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 관련 예규, 완주군에서 정하는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하며, 같은 규정 제59조(서식)에는 이 규정에 적용되는 서식 및 양식은 완주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.
- 그러나,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은 2020.4.23.일 “완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”으로 전부개정 하여 2020.5.1.일 시행 되었고, 2022.10.20. “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”으로 일부개정 하여 2022.10.20.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“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”으로 시행되고 있다.
- 따라서,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완주군의 관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“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” 및 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”에 따른다고 재무회계 규정을 개정했어야 하며, 규정에서 정한 별지 서식도 중복되는 내용의 서식은 통합 서식으로 수정했어야 한다.
- 그러나,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재무회계 규정 개정(서식 포함)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

-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재무회계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시정)

[일련번호] 6

감사결과 조치계획

[제 목] 특근 급량비 지출 증빙자료 미흡

[부서·기관명] (재)완주문화재단

[행정상 처분] 주의

[재정상 처분] 없음

[신분상 처분] 없음

[현 황]

○ 특근 급량비 지출 증빙자료 미흡 현황

발의일자	적요	금액(원)	대상(명)	비 고
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 ○월 특근 급량비 지출(○/○)	00,000	0	
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 ○월 특근 급량비 지출(○/○)	00,000	0	
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 ○월 특근 급량비 지출(○/○)	00,000	0	
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 ○월 특근 급량비 지출(○/○)	00,000	0	
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 ○월 특근 급량비 지출(○/○)	00,000	0	
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 ○월 특근 급량비 지출(○/○)	00,000	0	
○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○ ○월 특근 급량비 지출(○/○)	00,000	0	

[지 적 내 용]

○ 지방회계법 제5조(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) 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 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,

○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[별표 2]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

따른 집행기준 2. 일반운영비(201목) 2-1. 사무관리비(201-01) 마.
급량비에 의하면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
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(초과근무실적, 출퇴근 인증내역, PC접속기록,
문서 생산내역 등)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.

-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보수규정 제16조(부가급여)에 부가급여는 예산범위
내에서 [별표2]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
[별표2] 직원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의하면 “시간외수당” 지급률 또는
지급금액은 “통상임금×1/209×1.5”로 되어 있으며, 지급대상 및 기준은 “예산
범위 내 지급 (1일 4시간, 주 12시간 이내)”으로 되어 있다.
-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보수규정 [별지 1호서식] 초과(휴일)근무일지, [별지
2호서식] 초과근무확인대장, [별지 4호서식] 시간외 사후승인 사유서, [별지 5
호서식] 휴일 근무신청서가 규정되어 있다.
- 따라서,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에서는 특근 급량비를 지출할 때에는 실제
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(초과근무실적, 출퇴근 인증내역 등)을
증명 서류로 포함하였어야 한다.
- 그러나,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특근 급량비 지출시
객관적인 사실 증명 서류를 지출서류에 포함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

-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급량비 지출업무를 추진하여
주시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
바랍니다. (주의)

[일련번호] 7

감사결과 조치계획

[제 목] 물품관리 소홀
[부서·기관명] (재)완주문화재단
[행정상 처분] 주의
[재정상 처분] 없음
[신분상 처분] 없음
[현 황]

○ 재물조사 실시 현황

연도	재물조사 실시 여부	비고
2021	여	조사결과 보고 ('21. 9. 2.)
2022	여	조사결과 보고 ('23. 2. 7.)
2023	부	
2024	부	

[지 적 내 용]

- 「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」 제6조에 따르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- 그리고 「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」 제42조(정기재물조사)에 따르면 재단의 물품관리담당이 작성 시달한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재단의 모든 물품을 실제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,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얻도록 되어 있다.

- 그러나, 완주문화재단에서는 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재물조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(2021년, 2022년), 실시하지 아니한 (2023년, 2024년)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

-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관련 규정애따라 물품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주의)

[일련번호] 8

감사결과 조치계획

[제 목]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소홀

[부서·기관명] (재)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

[행정상 처분] 주의

[재정상 처분] 없음

[신분상 처분] 없음

[현 황]

○ 세출과목 예산집행 현황

연번	지급번호	통계목	적요	지급액	지급일자	비고
1	00000000-00000	업무추진비	000000 000 0000 0000 00000 00	0,000,000원	0000.00.00	
2	00000000-00000	업무추진비	00000000 000 00	000,000원	0000.00.00	
3	00000000-00000	업무추진비	000000 00000 00	000,000원	0000.00.00	
4	00000000-00000	업무추진비	000000 00000 0000 0000 000	000,000원	0000.00.00	

[지 적 내 용]

-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」 V.예산 집행기준 ③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, 일시,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- 또한, 업무추진비로 상품권, 기념품,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,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- 그러나, 완주문화재단에서는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으며, 업무추진비로 상품권, 특산품 등을 구입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

- (재)완주문화재단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추진하시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주의)